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21. 6. 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 일반회계 14억 2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 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2,252	830	1,422	171.3%
일반회계	2,252	830	1,422	171.3%
보조금반환수입	188	188	-	-
그외수입	1,471	-	1,471	순증
과태료	47	96	△49	△51.0%
국고보조금등	546	546	-	-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25억 6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계	29,689	27,127	2,562	9.4
	행정운영경비	633	633	-	-
	재무활동	7	-	7	순증
	사업비	29,049	26,494	2,555	9.6
일반회계	계	21,965	19,403	2,562	13.2
	행정운영경비	633	633	-	-
	재무활동 ¹⁾	7	-	7	순증
	사업비	21,325	18,770	2,555	13.6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6,333	6,333	-	-
	사업비	6,333	6,333	-	-
균형발전 특별회계	계	1,391	1,391	-	-
	사업비	1,391	1,391	-	-

1) 국고보조금 반환

(단위 : 천 원)

회계	세부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합 계			29,688,668	27,126,436	2,562,232	9.4%
일반 회계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소 계	669,600	469,600	200,000	42.6%
		연구용역비	669,600	469,600	200,000	42.6%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소 계	1,816,800	1,170,000	646,800	55.3%
		사무관리비	1,816,800	1,170,000	646,800	55.3%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소 계	200,000	-	200,000	순증
		사무관리비	200,000	-	200,000	순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소 계	213,832	176,392	37,440	21.2%
		사무관리비	195,692	158,252	37,440	2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0	9,500	-	-
		기타보상금	8,640	8,640	-	-
	국고보조금 반환 ²⁾	소 계	6,809	-	6,809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금	6,809	-	6,809	순증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소 계	771,183	-	771,183	순증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71,183	-	771,183	순증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소 계	250,000	-	250,000	순증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	250,000	순증
	지정계시대 설치 지원사업	소 계	250,000	-	250,000	순증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00	-	250,000	순증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소 계	200,000	-	200,000	순증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00	-	200,000	순증	

2) 20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만원과 해당 이자 등이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편성됨

II. 검토의견

- 도시계획국의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은 과업 추가·신규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과, 한국옥외광고센터 '2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 신규 편성,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과태료) 감액 등으로 요약됨.

1. 과업 추가 또는 신규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

-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에서 각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규제 개선 및 공공기획 대상지 추가 등 과업 추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신규 편성됨.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69,600	469,600	200,000	42.6%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1,816,800	1,170,000	646,800	55.3%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	200,000	순증
합 계				1,046,800	

-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과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³⁾ 정비(예정)구역 중 공공기획 대상지를 추가하는 것으로(6개소), 오세훈 신임 시장의 기성시까지 주택공급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이해됨.

3)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도 개선 및 관리방안 외에도, 전용주거지역 제도 개선 및 관리방안 마련도 추가됨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계	정비계획(신규)	정비계획(변경)
‘19년 시범사업 (‘19~’20)	총 4개소	상계주공5단지(‘20.6. 완료) 금호동3가 일대(‘20.6. 완료)	흑석11구역(‘19.9. 완료) 공평15·16지구(‘19.9. 완료)
‘20년 사업 (‘20~’21)	총 7개소	오금현대아파트(‘21.5. 완료) 신향빌라(‘21.4. 완료)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21.4. 완료) 왕십리역 일대(‘21.8. 완료 예정)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20.8. 완료) 신림1구역(‘21.5. 완료) 공평15·16지구(‘21.6. 완료 예정)*
‘21년 사업 (‘21~)	총 12개소 (본예산 6개소, 추경 6개소)	공공재개발 대상지 및 민간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지 등을 선정할 계획	

* 공평15·16지구는 시범사업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이후 유적지가 발견되어 정비계획 재변경 중

- 다만, 과업 추가를 위한 예산 증액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이하) 규제 개선방안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⁴⁾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되어 의회의 예산 심사 및 연구진의 연구 수행이 요식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순차성과 연구의 독립성·신중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작년 코레일로부터 도시계획변경(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 사전협상 제안서가 제출되어(‘20.4.) 올 4월 사전협상이 완료된 결과(붙임1), 후속 수행되는 감정평가에⁵⁾ 필요한 수수료 등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이해됨.

4) ‘21.5.26. 서울시 보도자료(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중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해 사업성↑), ‘21.6.4. 서울시 보도자료(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5) 공공기여량 확정을 위해 감정평가 실시(사전협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2. 옥외광고물 관련 “그외수입 및 해당 세출예산 신규 편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이 서울시에 배분됨에 따라(14억 7천1백 만 원) 해당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새로 편성됨.

(단위 : 천 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그외수입	1,471,183	-	1,471,183	순증
세출예산	합 계	1,471,183	-	1,471,183	순증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71,183	-	771,183	순증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	250,000	순증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00	-	250,000	순증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00	-	200,000	순증

- 옥외광고물법의 옥외광고사업은, 광고물등의⁶⁾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행정안전부 산하)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체로 수익금의 50%는 자치구 광고물등 정비에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국제행사 개최에 지원되는 가운데(붙임2),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국제행사 잔여금이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서울시에 배분된 것으로 파악됨.

6)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 교부 관련〉

(단위: 천 원)

	‘20			‘21		
	사항 또는 사업	본예산	최종 예산 (간주처리)	사항 또는 사업	본예산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	국고보조금	-	925,000	그외수입	-	1,471,183
세출 예산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	925,000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	250,000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	771,183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	250,000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	200,000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물 수익 교부금이 ‘20년에는 국고보조금 간주처리된 반면, ‘21년에는 그외수입으로 추경 편성하였는데, 교부 주체인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국가 기관은 아니므로 해당 교부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시정 편성한 것으로 이해됨⁷⁾.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교부에 따른 세출사업 및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20.12.)⁸⁾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통해(‘21.2.) 해당 사업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는데(붙임3).

‘21년 사업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노후간판 교체),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노후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임.

7)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8) ‘20.12. 행정안전부 결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송금

- 아래 표와 같이, 위 사업들은 서울시 기존 사업들과 유사·중복성이 있으므로, 자치구별 전체적 수요 및 기편성된 유사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균형된 자치구 예산 교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 천 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2,460,000	2,460,000	-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노후간판 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71,183	-	771,183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000	500,000	-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50,000	-	250,00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680,000	680,000	-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00	-	200,000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000	-	250,000

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과태료) 감액”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중 연수교육이 자치구 사무로 위임되면서⁹⁾ 연수교육

9)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20.12.31, 시행 ’21.1.1.),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 (제5조 관련)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사무” 신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가. 연수교육 실시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및 제96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8조제4항	구청장 구청장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주체가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 해당 예산을(과태료 4천8백5십1만 원) 감액하는 사항임.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은 서울시 사무로서 위탁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위탁기관의 교육 장소가 서울 동부·남부에 집중된 결과 교육생들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이 연수교육과 집합교육(자치구 실시)에서 중복 실시되는 비효율성 문제 등에 대응하여 사업방식을 위탁에서 자치구 시행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됨¹⁰⁾.

연수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기/ 이수시간	비용 (교육생 부담)	교육장소
교육위탁 ↓ 자치구 시행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매 2년/ 12~16시간	6~7만원 무료	교육 위탁기관(8개소) 등록관청별 교육 실시

- 다만, '21년 세출예산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자치구 사무 위임을 반영한 반면¹¹⁾, 세입예산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번 추경을 통해 시정하게 되었는데,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일관성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10)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중 실무교육은(중개사무소 개설 및 고용신고하려는 자 대상) 변경 없음
(서울시 사무로서 교육위탁)

11) '20년 예산 :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에 교육사업비 1억원 편성

→ '21년 예산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천5십만 원 편성

※ 세출예산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기정예산	증 감	추경예산(안)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기간: '20.3.31.~'21.12.31. ○과업내용(추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도 변경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에의 영향분석, 제도정비 방향,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마련 등	669,600	200,000	869,600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위치/면적: 중구봉래동2가122일대/29,298㎡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철도폐지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7호)」 에 의거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 시행	-	200,000	200,000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 사업기간 : '21.7.~12. ○ 추진내용 : 공공기획 신규 6개소 추진 - 스피드 주택공급 및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도시·건축혁신방안 적용 -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도시·건축 통합 가이드라인 제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공공기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운영, 기초조사 및 시뮬레이션	1,170,000	646,800	1,816,800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운영	○추진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운영현황 - 매월 2,4주 수요일 개최 - 소위원회 : 수시 개최 ○증액사유 : 사전절차 횟수 증가 및 기본료 조정	158,252	37,440	195,692
국고보조금 반환	○'20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천원 ○이자발생액 309천원 (지가조사 199,940원, 지적관리 108,380원)	-	6,809	6,809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사업기간: '21.7.~'21.12. ○위치: 25개 자치구 ○지원내용 : 소상공인 옥외간판 교체 지원 등 ○지원금액 : 건당 200만원 이하	-	771,183	771,183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업기간: '21.7.~12. ○위치: 25개 자치구 ○지원내용: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등	-	250,000	250,000
지정계시대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21.7.~12. ○위치: 25개 자치구 ○지원내용: 현수막 지정계시대 교체 및 설치 등	-	250,000	250,000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21.7.~12. ○위치: 25개 자치구 ○지원내용: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등	-	200,000	200,000

〈붙임1〉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사전협상 관련 (자료: 도시계획과)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18.11.) : 감정평가 기준

□ 추진경위

- '20.04.24. :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코레일→시)
- '20.04.~06. : 관련부서 및 자치구 협의, 공공기여 수요조사
- '20.06.~'21.02. : 협상조정협의회(5회) 개최, 전문가자문, 실무회의
- '21.03.08 : 사전협상 제안서 보완제출(코레일→시)
- '21.03.18 : 사전협상 결과 보고(행정2부시장)

□ 사업개요

- 위치 :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29,298 m^2)
- 도시계획 :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신설
 - 공공기여비율 : 47.54%(약 2,198억원)
- 개발계획(안)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구분	당초(m^2)	변경(m^2)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5,791	-	감) 25,791
일반상업지역	3,507	29,298	증) 25,791
합계	29,298	29,298	

- 높이계획 : 120m이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150m이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폐지, 도로 신설
- 건축계획 : 지하5층/지상 40층, 연면적 349,504.40 m^2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 오피스텔

〈붙임2〉 옥외광고사업 관련 규정 (자료: 도시빛정책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 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9.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하 생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 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사업에 사용한다. (이하 생략)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1. 주요 국제행사

- 가.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 나.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 다.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 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산정할 때에는 광고물 설치비,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 설치·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 1)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 2)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 3)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분할 것

-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
- 2)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배분하기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할 것

-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나목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
-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맞추어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분 비율에서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 라.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국제행사에 지원하는 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로 할 것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나목1)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에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에 배분하려는 수익금의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배분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배분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새롭게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한 금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바.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가 종료된 후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조정·배분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위원회는 그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 사.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바목에 따라 반납 받은 금액을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붙임3〉 행안부 광고수익금 지원사업 자치구별 최종 교부 결정(자료: 도시빛정책과)

(단위 : 천 원)

구 별	총 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설치 지원사업
종로구	32,000	-	10,000	-	22,000
성동구	231,060	-	43,060	160,000	28,000
광진구	66,000	30,000	6,000	30,000	-
동대문구	140,000	80,000	10,000	40,000	10,000
중랑구	12,000	-	12,000	-	-
강북구	28,000	-	-	-	28,000
도봉구	32,000	-	12,000	20,000	-
노원구	123,000	90,000	5,000	-	28,000
은평구	149,183	121,183	-	-	28,000
서대문구	80,000	60,000	20,000	-	-
마포구	171,000	120,000	23,000	-	28,000
구로구	158,000	120,000	10,000	-	28,000
영등포구	21,500	-	21,500	-	-
관악구	70,000	60,000	10,000	-	-
송파구	0	-	-	-	-
강동구	157,440	90,000	67,440	-	-
계	1,471,183	771,183	250,000	250,000	200,000